

# 플레이포레스트(PlayForest) 협동조합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플레이포레스트(PlayForest) 협동조합이라 한다. 약칭으로는 '플포' 또는 '놀숲'이라 한다.

### 제2조(목적)

플레이포레스트(PlayForest)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비자 그리고 자연환경의 공존을 위하여 숲·생태여행 플랫폼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조합의 책무)

-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③ 조합은 전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여행 프로그램과 생명의숲 지역조직, 숲해설가, 아름다운숲 관리자 등 숲NGO와 함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을 통해 전국의 숲·생태여행 플랫폼을 다지기위해 노력한다.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일차적으로는 대한민국 전국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해외로 확장한다.

### 제6조(광고방법)

-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원

### 제10조(조합원의 자격)

-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자조합원: 조합의 프로그램 기획 및 등록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 제11조(조합원의 가입)

-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4조(탈퇴)

-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제15조(제명)

-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조합에서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와 공존의 가치를 위배한 경우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1. 6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 제18조(출자)

- ①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의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책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지분이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후원(술통동기금과 같은 사회공헌)할 목적으로 후원자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상품사용료
  4. 플랫폼수수료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5조(과태금)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6조(법정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임의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28조(총회)

-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9조(대의원총회)

-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한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대의원의 정수는 21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서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32조(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할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5조(총회의 의사)

-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제39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2조(이사회)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43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4조(이사회회의 의사)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45조(이사회회의 의사록)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원과 직원

### 제46조(임원의 정수)

-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에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7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의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회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회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회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이사회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등)

-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임원의 해임)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 ① 이사회는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0조(직원의 임면등)

-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오픈 플랫폼 서비스 사업
  2. 생태여행 프로그램 사업
  3. 숲을 담은 에코랏지(Ecolodge) 사업
  4. 숲생태여행 관련 연구사업
  5. 숲생태여행 컨설팅 사업
  6. 숲생태여행 아카데미 사업
  7. 국내 여행업
  8. 국외 여행업
  9. 일반 여행업
  10.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11.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2.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1.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7.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계

####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5조(회계)

-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한다.

#### 제66조(결산등)

-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7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제68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 제69조(합병과 분할)

-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70조(해산)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71조(청산인)

-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자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 부칙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 플레이포레스트협동조합

2016년 3월 2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1209

---

#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playforest cooperative

---

## Chapter 1 – General

### Article 1 – Establishment and Name

This association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fundamental law of cooperation, and it shall be named PlayForest association. “PI-po” or “Nol-soop” also stands for PlayForest.

### Article 2 – Object

The object of PlayForest Association (hereinafter “Association”) is doing business of forest, environment platform for coexistence among community, customers and environment through independent and autonomous activities.

### Article 3 – Responsibility

1. Association shall actively perform education, training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to increase rights and interests.
2. Association shall strive to increase mutual cooperation, understanding and joint business with other associations, associations in accordance with other legislations, foreign associations and relevant international institute
3. Association shall strive to build national forest and environment travel platform through mutual cooperation, improved understanding and joint business using eco travel program, community of forest of life, forest commentator, and beautiful forest manager.

### Article 4 – Office Location

Main office shall be located in Seoul and branch could be established if necessary

### Article 5 – Business Place

The first business place shall be Korea and expanded to overseas by phases

### Article 6 – Notice Method

1. Notice of the Association is posted on bulletin board of main office (including that of branch office), and it could be, if necessary, posted on Daily Newspaper and Joongang Daily Newspaper published by Seoul
2. The period of notice of Clause 1 shall be over 7 days, and details that can have important effect on interests of the Association should be notified with notice in written form

### Article 7 – Notice and Consideration Method

Notice and consideration to member of the Association should be sent to registered address, and the period should be over 7 days. However, if the member designated separate contacts, notice should be sent to thereof.

### Article 8 –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Election for Public Office

1. The Association must not do some activities that advocate or help specific designates for public election.

2. Anyone must not do activities stated in Clause 1 using the Association

#### Article 9 – Regulation

Necessary items to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and execution of business can be established as regulation excluding items decided in this article of association

### **Chapter 2 – Member of the Association**

#### Article 10 – Qualification of Member

1. Anyone who readily agree with the object of establishment and performing responsibility one of members can be joined to membership
2. Type of Member is written in following:
  1. Provider: Members who participate in program project and registration
  2. Employee: Members employed by the Association

#### Article 11 – Joining of Member

1. Qualified person should submit application form to join association if he or she wants to join
2. The Association shall check if the Clause 1 happens and decide acceptance or rejection within 2 weeks noticing applicants via written form or phone call.
3. Applicants who obtained acceptance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2 is qualified to join the Association and shall make a payment stated within period.
4. The Association cannot reject or add disadvantages qualified applicants without reasonable causes.

#### Article 12 – Notice Responsibility of Member

In case modification of applicants exis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Clause 1, or disqualified, members should notice him or her immediately.

#### Article 13 –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of members is limited to amount of investment.

#### Article 14 – Withdrawal

1. Members can withdraw from the Association by noticing 30 days in advance.
2. Members are withdrawn in case following statements:
  - a. Disqualified by transferring position
  - b. Death
  - c. Bankruptcy
  - d. Being sentenced as guardianship
  - e. Liquidation of corporate of members and Association

#### Article 15 – Expulsion

1. Association can expel a member in case of following statement:
    - a. If association's facility or business is not used for over 2 years.
    - b. If the responsibility such as investment or payment of expenditure is not performed
    - c. If violated articles of association related with business of association
  - d. Disrupted business of association or damaged credibility of association by deliberate reason or faults
  - e. Violated value of environmental and coexistence's value pursued by the association
- ※ In case for Labor Cooperation
1. If not participated in association's activities for consecutive 0 years.

2. If the association expels a member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the notice should be sent to relevant person before 10 days of opening of general meeting for him or her explaining reasons
3. The resolution for expulsion without giving opportunity to explain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2 is not effective.
4. In case the resolution of expulsion exists, the reason of expulsion should be noticed to relevant member in written form.

#### Article 16 – Right of Claim for Share Return by Expelled Members

1. Resigned or expelled members from the association have rights to return their shares
  - a. Resigned member's amount of share in case of resign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 b. Expelled member's amount of investment in case of expul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2. Share of the Clause 1 is decided in accordance with last fiscal year and association's asset and debt.
3. Association can stop the return of share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until resigned members clear their debts. However, if resigned or expelled members have debts to association, it can be offset by refund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4. Rights of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is expired if not executed within 2 years from resigned or expelled date.
5. Rights of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can be claimed next fiscal year from the resigned or expelled fiscal year.

#### Article 17 – Responsibility of Loss by Resigned Members

1. If resigned member's amount of refund cannot clear debts owing to the association, resigned members should clear the debt within the scope of amount of investment.
2. Payment of loss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should comply with Article 16, Clause 4

### **Chapter 3 – Investment and Bearing Expenses and Saving**

#### Article 18 – Investment

1. Members should make an investment more than 1 account, and amount of 1 account is 100 thousand WON.
  2. The number of investment by one member should not exceed 30% of total number of investment.
  3. Amount of payment should be paid at once. However, if inevitable, it can be made by twice.
  4. In case of the Clause 3, the first payment shall be half of investment, and the date of second payment should be done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first payment.
  5. Amount of payment that will be paid to association cannot offset bond to association.
  6. Investment can be made in kind, and its amount i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 In this case, a member who makes an investment in kind should transfer it to the place designated by association.

#### Article 19 – Issuing Certificate of Investment

1. Chairman of boards should issue certificate of investment with sealed and signed to memb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such requests exist stating following items.
  - a. Name of Association
  - b. Name of Members
  - C. Date of Joining Association
  - D. Date of Payment of Investment
  - E. Amount of Payment and the Number of Account
  - F. Issuance Date



2. Chairman of boards should notice members about modification of investment amount before 7 days of annual regular meeting. In this case, notice can be made by mail, e-mail, facsimile, mobile, SMS and etc.

#### Article 20 – Scope of Share

Shares of members to asset of association are following items. However, legal reserve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Article 50 Clause is not included.

- a. Investment paid by members
- b. Secured reserve fund in annual fiscal year (including deficiencies)

#### Article 21 – Transfer of Shares and Prohibition of Acquisition

- a. Transfer of shares or position of members should obtain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 b. Transfer done by anyone not part of association or members should comply with examples of joining.
- c. Transferee succeeds to right and responsibility of shares.
- d. Members cannot share their shares with others.
- e. Association cannot obtain shares of members for the purpose of right of pledge.

#### Article 22 – Resolution of Reducing Amount of Investment

1. Association can reduce the amount of investment by request if inevitable reasons exist.
2. Association writes a balance sheet within 14 days from resolution of reducing amount of investment (hereinafter “Reducing Investment”)
3. Association shall notice creditors within 14 days from the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if objection to creditors exists, and individual consideration for known creditors shall be made.
4. The period of obj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3 shall be over 30 days.
5. Other methods and procedures of reducing investment can be established by special regulation.

#### Article 23 – Objection to Reducing Investment by Creditors

1. Reducing amount of investment is deemed to be agreed if creditors do not object within perio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2. Debts should be reimbursed or collateral should be provided if creditors object.

#### Article 24 – Expenditure and Fee and Commission

1. Association can impose and collect fee and commission from someone who uses business of association as following statements:
  - a. Basic subscription
  - b. Patronage (special subscription like forest movement fund)
  - c. Product fee of use
  - d. Platform commission
2. Expenditure and fee, amount, method, collecting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shall be established by regulation.
3. Members cannot offset expenditure and fee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with bond.
4. For the Clause 2, already imposed amount cannot be changed even though the modification of imposing on members exists.

#### Article 25 – Fine

1. Association can collect fine or penalty fee from members who did not perform payment until the period.
2. Members cannot offset fine or penalty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with bond.
3. Amount and collecting method of fine or penalty fee shall be established by regulations.

#### Article 26 – Legal Reserve

1. Association should, if any, save 10% of surplus from settlement until it is saved as triple as total payment of relevant fiscal year.
2. Legal reserve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should not be used without covering loss or liquidation.

#### Article 27 – Voluntary Reserve

1. If surplus still exist after the application of Article 26, association can save over 20% of surplus as voluntary reserve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decided by general meeting.
2. Voluntary reserve can be used for the purpose of business preparation, business development expense, education and special purpose.

### **Chapter 4 –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 Article 28 – General Meeting

1. Association shall have general meeting.
2. General meeting is classified as regular meeting and temporary meeting.
3. General meeting consists of members and chairman of boards shall be a chair.

#### Article 29 –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1.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can exist if the number of members exceeds 200.
2. Delegates shall be individually elected in accordance with type of Article 10, Clause 2. However, the number of delegates should be decided by board of directors.
3. Voting rights of delegates cannot be executed by proxy.
4. The number of delegates shall be over 21 and term shall be 2 years.
5. The term of elected delegate for vacancy shall be remainder of period of predecessor.
6. Delegates shall be elected through election of members, and election method shall be decided by election management regulation.
7.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should comply with items related with general meeting, and “member” is deemed to be “delegate” in this case.
8.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cannot make a resolution about association’s merge, division and liquidation.

#### Article 30 – Responsibility and Disqualification of Delegates

1. Delegates shall attend and participate in voting of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2.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can make delegates disqualified if following items happen. In this case, the notice should be done to delegates before 7 days of resolution date and opportunity to explain for delegates should be given.
  - a. If delegates do not attend general meetings of delegates after receiving notice without reasons for consecutive 3 times or do not participate in voting about same agenda for consecutive 2 times.
  - b. Disrupted opinions in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by dishonest methods.
  - c. Damaged credibility and honor of association by deliberate purpose or blunders.

#### Article 31 – Regular Meeting

Regular meeting shall be convened within 2 months from the end of every year’s first fiscal year.

#### Article 32 – Temporary Meeting

1. Temporary meeting shall be convened by chairman of boards in case of following items:

- a. It is acknowledged as necessary by chairman of boards and board of directors.
  - b. Requesting to chairman of boards in written form obtaining over 20% of members' acceptance.
  - c. If auditor finds out illegal facts or corruption in asset status or business execution and request convening meeting to chairman of boards.
2. Chairman of boards shall proceed, if available, convening meeting within 2 weeks from receiving such requests stated in the Clause 1, 2 (including dismissal reque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8) and 3.
  3. If there is no convening person after receiving requests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2 and 3 or the procedure of convening is not done within 2 weeks from receiving such requests, then auditor shall proceed such requests in 7 days. In this case, auditor shall perform the responsibility of chair.
  4. If the auditor did not proceed or cannot proceed convening procedure within period of the Clause 3, a member who requested convening shall convene meet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Clause 2. In this case, the representative of members shall perform the responsibility of chair.

#### Article 33 – Convening Procedure of General Meeting

1. Chairman of boards shall notice each member via mail or e-mail before 7 days of opening deciding meeting's purpose, agenda, date and place.
2. If chairman of boards cannot proceed meeting for unavoidable reasons, the process shall be decided by Article 53.

#### Article 34 – Matters for Resolution

Following items shall obtain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1. Modification of articles of association
2. Enactment, modification or abolition of regulation
3. Election and dismissal of boards
4. Acceptance of business plan and budget
5. Statement of accounts (it means business report, balance sheet, statement of profit and loss, management of surplus or management of loss and etc.)
6. Acceptance of audit report
  7. Merge, division, liquidation or cessation of association
  8. Expulsion of members
  9. Returning amount of investment to resigned members (including expelled ones)
  10. Other necessary items acknowledged by chairman of boards or board of directors

#### Article 35 – Proceeding of General Meeting

1. Proceeding of general meeting shall be opened by majority number of total number of members of association excluding the special case needed by legislation, and resolution shall be decided by majority vote.
2. If the general meeting stated in the Clause 1 is adjourned for a lack of quorum, chairman of boards shall convene general meeting again within 20 days.
3. General meeting can make a resolution noticed in adv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However, if emergency,
4. Members relevant to dealing with items that contrary to interests of members and association can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 Article 36 – Resolution of Merge, Division and Liquidation

Following items shall be decided by attendance of majority members and consent of two-thirds of attendants.

1. Modification of articles of association

2. Merge, division, liquidation or cessation of the association
3. Expulsion of members
4. Returning amount of investment to resigned members (including expelled members)

#### Article 37 – Voting Right and Suffrage

1. Members shall have one voting right and one suffrage without regard to the number of finance.
2. Members can have proxy to execute voting right and suffrage. In this case the relevant member is deemed to be attended.
3. Proxy qualified with the statement of Article 38 shall submit designated application that proves qualification of proxy before executing voting right or suffrage.

#### Article 38 – Qualification of Proxy

Proxy related with previous Article, Clause 2 shall be other members, family (spouse or direct brother and sister or spouse of direct brother and sister), and the number of a qualified member that can perform proxy shall be one.

#### Article 39 – Minutes

1. Minutes related with general meeting shall be made.
2. Minutes shall contain progress, condition and conclusion, and it shall be sealed or signed by chair and 3 members elected in general meeting.

#### Article 40 – Operation Regulation of General Meeting

Necessary items to operation of general meeting not stated in articles of association shall be decided by operation regulation of general meeting.

#### Article 41 – Extension of Session

1. Session of general meeting can be extended by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2. Article 33, Clause 1 cannot be applied to general meeting continued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1 c

#### Article 42 – Board of directors

1. Board of directors shall exist in association and decide business execution of association.
2. Board of directors consist of chairman of boards and boards; one for chairman of boards, vice chairman, executive director, managing director and etc.
3. Chairman of boards shall convene board of directors and be a chair thereof.
4. Convening board of directors shall be noticed to each board in written form stating meeting's purpose, agenda, date and place. Convening procedure can be omitted if majority of board of directors agree with for emergency.
5. Convening board of directors can be done by submitting written request of one-third of boards or all audits writing the purpose of meeting.
6.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shall convene board of director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stated in Clause 5.

#### Article 43 –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1. Board of directors shall make decisions of following items:
  - a. Items related with asset and business execution of association
  - b. Convening general meeting and agenda
  - c. Enact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regulation
  - d. Writing business plan and budget

- e. Acceptance of designating boards
  - f.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basic asset
  - g. Other important matters related with operation of association or items related with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2. Board of directors can establish and operate necessary committee to perform each business sated in Article 61.
  3. Structure and operation of committee of Clause 2 shall be separately decided.

#### Article 44 – Proceeding of Board of Directors

1. Board of directors shall be opened by majority attendance and decided by majority assent done by attendants.
2. Boards relevant to dealing with items contrary to interests of association and members can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 Article 45 –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Minutes shall contain progress and conclusion, and shall be sealed or signed by all attended boards.

### **Chapter 5 – Boards and Employees**

#### Article 46 – Number of Boards

1. The number of boards shall be 3 to 10 including chairman of boards and one audit. Boards shall be formed with diverse interest parties.
2. Boards of Clause 1 can have permanent board by mutual election.

#### Article 47 – Appointment of Boards

1. Boards and audits shall be appointed from members by general meeting. Boards shall be elected within one-fifth, audits shall be elected one-half of recommendation of board of directors.
2.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shall be elected from boards in general meeting and vice chairman, executive director and managing director shall be elected by mutual election.
3. Election method and procedure of the Clause 1 and 2 shall be separately decided as election management regulation.

#### Article 48 – Limit of Election Campaign

1. No one can perform following activities to support or help someone being elected.
  1. Following activities of members, family there of or institute and facility run by family
    - a. Providing money, goods or banquet
    - b. Providing position of public and private matter
    - c. Statement and provision of money, goods, banquet or other profits
2. Anyone who wants to be boards or delegates cannot visit members or be gathered in specific place for election campaign.
3. No one can criticize other delegates using speech, poster and other methods announcing and disclosing true or wrong information.
4. No one can do other election campaigns excluding following items.
  - a. Posting election campaign
  - b. Distribution of election information
  - c. Distribution of small printed matter
  - d. Joint speech or opening public debate
  - e. Advertisement via phone, SMS, fax, computer communication, e-mail and etc.

#### Article 49 – Structure and Operation of Election Board

1. Election board can exist (herein after “Committee”) to manage election matter fairly.
2. Committee consists of less than 10 members including one chair elected from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In this case, someone who registered as candidate of boards cannot be a member of committee.
3. The period of appointment shall be 2 years from the appointment date, and the position of committee is lost when disqualified as a member of association.
4. Chair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lead the committee convening.
5. Chair shall bring up important agenda to committee and committee shall be opened by majority number of committee and decision shall be made by majority of attendants.
6. Committee shall manage following works:
  - a. Qualification evaluation of candidates
  - b. Confirm list of candidates
  - c. Confirming valid or invalid of candidate recommendation
  - d. Writing election information and decision and enactment of election campaign method
  - e. Election management, voting and poll management
  - f. Judgement to objection of valid or invalid of voting
  - g. Arbitrate dispute related with election
  - h. Confirming successful candidate
  - i. Other necessary matters for election
7. Committee shall write minutes that contain progress and conclusion, and it shall be sealed and signed by attended committee members.
8. Members of committee shall be fair when working for election management
9. Other necessary items for structure and operation of committee shall be decided as election management regulation.

#### Article 50 – Disqualifications of Boards

1. Someone relevant to following items cannot be a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 a. Person under audit guardian system
  - b.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 system
  - c. Person who did not restore from bankruptcy
  - d. Person who sentenced to more than imprisonment and 3 years did not pass from its end yet.
  - e. Being sentenced to probation more than imprisonment and 2 years did not pass from its end yet.
  - h. Disqualified by judgement of court or other legislations
2. If the Clause 1 happens, relevant boards will be resigned (person who work as boards in case the corporate is board of association)
3. Activities done before resignation of resigning board in accordance with Clause 2 shall not be effective.

#### Article 51 – Term of Board

1. The term of board shall be 2 years.
2. Boards can serve consecutive terms. However, the term of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can be served consecutive 2 terms.
3. The term of elected board for vacancy is until the date of termination of predecessor.

#### Article 52 – Prohibition of Additional Business of Boards

1.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cannot do additional business of other associations.
2. Boards and employees including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cannot do additional businesses.
3. Boards of association cannot b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or member of local assembly.

4. Boards cannot work as employee of this association. However, this Clause is not applied during period that the number of members of association is less than 10.

#### Article 53 – Duty of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and Boards

1.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represent the association and execut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decided by board of directors.
2. Boards shall support chairman and execute work of association.
3. If accident to chairman occurs, vice-chairman, executive manager, managing director, boards, and audit shall perform duty in order, and senior one will perform the duty if relevant position consists of more than 2.
4. Boards cannot represent the association without the case stated in Clause 3 and delegation by chairman.

#### Article 54 – Duty of Audit

1. Audit shall report about business progress, condition, asset status and documents audited more than once in a year to general meeting. General audit report including half yearly audit report shall each be reported to general meeting.
2. Audit can check the correctness ledger and documents without notice.
3. Audit shall request modification when chairman and boards executed business contrary to resolution of legislation, articles of association, regulation or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4. Audit can state opinions attending general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5. If audit is more than 2 in case of audit report stated in the Clause 1 and 2 and opinions are not same, each opinion can be submitted.

#### Article 55 – Represent of Audit

Audit shall represent the association when association executes lawsuit and contract including chairman and boards.

#### Article 56 – Duty and Responsibility of Boards

1. Boards shall comply with legislation, articles of association, regulation and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and perform duty in decent manner.
2. Boards shall compensate in solidarity if violated articles of association or damaged association for indolence.
3. Boards shall compensate in solidarity to the third party if damaged the third party by deliberately or blunder.
4. Boards consent with resolution also have responsibility of the Clause 2 and 3 if the activity of the Clause 2 and 3 is done by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5. Boards who did not clearly showed objection participating in resolution of the Clause 4 are deemed to agree with resolution.
6. For execution of right to indemnity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2 to 5, chairman for audit and boards, audit for chairman, and acceptance of one-fifth of members for all boards shall be representative of association.

#### Article 57 – Payment of Boards

1. Expense can be paid within the scope of actual expense for boards can be provided.
2. Payment for permanent boards can be paid in accordance with decision of regulation.

#### Article 58 – Dismissal of Boards

1. Acceptance of one-fifth of the number of members can request dismissal of boards in general meeting. In this case, the reason of dismissal shall be submitted to association in written form.

2. Association shall notice relevant boards about reason dismissal before 10 days of opening general meeting, and give opportunity him or her to explain in general meeting.

#### Article 59 – Open Operation

1. Chairman shall open operation status such as result of fiscal year.
2. Chairman shall place articles of association, minutes of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ledger and members list in main place of office.
3. Statement of accounts shall be placed in main office before 7 days of regular meeting.
4. Members and creditors of association can request disclosure of documents of the Clause 2 and 3 to chairman. But, copies of documents can be limite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5.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cannot object without reason when receiving the request of the Clause 4.
6. In case the number of members exceeds 200 or payment of investment written in statement of account before obtaining acceptance of regular meeting exceed 3 billion WON, each following item shall be placed in Seoul where main office is located or homepage of cooperation association in 3 months.
  - a. Articles of association and regulation
  - b. Statement of accounts
  - c. General meeting,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circumstance of board of directors
4. Result report of business

#### Article 60 – Designation of Employees

1. Employees shall be designated by chairman. However, executive and directors are designated by chairman after undergoing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2. Necessary items related with employee's designation, payment and miscellaneous shall be established by regulation.

### **Chapter 6 – Business and Execution**

#### Article 61 – Type of Business

1. This association can do following business to achieve the objective.
  - a. Open platform service business
  - b. Eco travel program business
  - c. Ecolodge business that contains forest
  - d. Research business related with eco travel
  - e. Eco travel consulting business
  - f. Eco travel academy business
  - g. Consultation, education, training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business for members and employees
  - h. Business for advertisement of association and local community
2. Business shall be performed legally and properly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condition and procedure.
3. Association cannot manage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Statistical Law” Article 22 Clause 1.

#### Article 62 – Use of business

Association cannot let someone not member uses business of association. However, following items can be used.

- a. Provision of sample with charge or free to advertise for making members joining. However, if the association is social service provide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of Social Service Use and Use Management” Article 2, Clause 4, the case is excluded.
- b. Public institute social organization wants to participate in holding event for public benefits.



- c. General citizens wants to use business done jointly by public institute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of Public Institute Operation”, Article 4
  - d. If other legislation states mandatory provision of provision service to someone not a member
  - e. Association that do business in school wants to provide students, teachers and visitors with goods or service
  - f. If 5% of last year’s total provision is provided with charge or free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joining (Social service provider is excluded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of Social Service Use and Use” Article 2, Clause 4) during the period of declaration to governor (hereinafter called “Promotion Period”, not over than 3 months in a year). However, 1 year from receiving declaration confirmation, goods can be provided with charge or free without limitation; the period of advertisement shall not exceed 6 months (In case of unit shop, 1 year form opening).
7. Family of members of association tries to use business.

#### Article 63 – Business Plan and Budget Balance

1. Board of directors shall secure business plan of relevant year within 2 months after each fiscal year, and budget for plan shall be confirmed by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2. Until business plan and budget in accordance with Clause 1 are made, it can be executed with provisional budget comparing with budget of last year.
3. Acceptance of modification in next term’s general meeting is needed if modification of business plan and budget exists.

### **Chapter 7 – Accounting**

#### Article 64 – Fiscal Year

Fiscal year of association shall be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of every year.

#### Article 65 – Accounting

1. Accounting of association is classified as general accounting and special accounting.
2. Business of association concerned shall be done by general accounting.

#### Article 66 – Final Account

1. Association shall submit statement of accounts to audit before 7 days of regular meeting.
2. Association shall obtain approval submitting statement of accounts and audit’s opinions to regular meeting.

#### Article 67 – Conservation of Loss

Association shall conserve carry forward payment unfinished, temporary reserve and legal reserve in order if loss (loss for the term) occurs after the statement of account in each fiscal year, and shortage shall be transferred to next fiscal year if loss still exist.

#### Article 68 – Distribution and Carryforward of Surplus)

1. Association can distribute surplus to members by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if surplus exist after making up los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saving legal and temporary reserve of Article 26 and 27.
2. Distribution of the Clause 1 shall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usage record of business association or the ratio of payment done by members. In this case, surplus distribution shall comply with following items:
  - a. 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usage record shall be over 50% of distribution.
  - b. 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amount of investment shall not exceed 10% of investment
3. Distribution of surplus’ method, procedure and etc. shall be decided by regulation.

4. Association can carryforward surplus to next fiscal year by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if surplus exists after making up loss according to the Clause 68 and reserve sav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and 27, and distribution of Clause 1.

### **Chapter 8 – Merge, Division and Liquidation**

1. Association can do merge or division after writing merge contract or division contract obtaining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2. Maintenance or new established association after merge or division shall succeed to right and responsibility of extinct association.

#### **Article 70 – Liquidation**

1. If following items happen, the association will be liquidated and its procedure will be done in accordance with liquidation procedure and civil law.
  - a.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 b. Merge, division or liquidation
2.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shall notice members about liquidation immediately.

#### **Article 71 – Liquidator**

1.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shall be a liquidator excluding the case of bankruptcy. However, the case can follow the circumstance as another person is designated as liquidator from general meeting,
2. Liquidator shall check asset status immediately writing asset list and balance sheet to obtain approval of general meeting deciding method disposition of property.
3. Liquidator shall write statement of accounts immediately and obtain approval of general meeting if liquidation business is finished.
4. For the Clause 2 and 3, In case of general meeting is not convened despite convening more than twice, approval of two-third of attendants is deemed to be accepted.

#### **Article 72 – Management of Residual Asset after Liquidation**

1. If residual asset exist after reimbursing debt, it shall be distributed to members in accordance with the ration of investment by decided method of general meeting.
2. Residual asset after liquidation can be given to nonprofit corporations that have similar purpose of the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decision of general meeting.

#### **Annex**

This Articles of Association is effective from the date of amendment complete by Mayor of Seoul.

## **PlayForest Cooperative**

2 March, 2016

Address: 1209, 313, Teheran-ro, Gangnam-gu, Seoul

